

의안번호	2217213
의 퇴 인	이연희의원
회 답 일	2026.3.11.
추 계 번호	26B1267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9조제6항 신설 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이동통신서비스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)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함(제6항 신설) 1.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한정한다)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. 제1호에 따른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것	의무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49조제6항 신설 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, 이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, 신규 건축물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이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현행 「전기통신사업법」 1) 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,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공공건축물 중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관련 공간 및 시설이 일부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은 의무 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, 기존 건축물의 포함 여부 및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계 대상 물량이 불확정적이고, 해당 건축물의 면적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[표 1] 이동통신설비 의무설치 제도

구분	의무설치대상	의무설치장소	주요시설 확보기준 (건축주 의무사항)
건축물 (다중이용건축물 제외)	연면적 1,000㎡ 이상 건축물 중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(국방·군사시설 제외)	각 지하층	1. 공간 확보 - 옥외 안테나(지상/옥상): 4㎡ 이상 - 실내 중계장치: 2㎡ 이상 (높이 2m 이상)
다중이용건축물	「건축법 시행령」 상 다중이용 건축물로서, 문화·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여객운수시설, 종합병원, 관광숙박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5,000㎡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	각 지상층 및 각 지하층	2. 상용 전원 - 용량 4kW 이상 확보 -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(최단 거리)

1) 제69조의2(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)

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(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2. 「주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
3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,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,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,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구분	의무설치대상	의무설치장소	주요시설 확보기준 (건축주 의무사항)
공동주택	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택 및 시설	지상층(고시기준) 및 각 지하층	3. 인입 배관 - 급전선용: 내경 36mm 이상, 3공 이상 - 광케이블용: 내경 22mm 이상, 예비 포함 2공 이상
도시철도	도시철도시설	고시 기준 적합 장소	4. 접지 시설 - 중계장치 최단 거리에 접지단자 설치

자료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,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및 별표 1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